

#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370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4.

발의자 : 송바우나 의원 외 5명

## 1. 개정이유

-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,
- 재난피해를 입은 안산시 주민이 피해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생활안정지원금 용어 및 지급 대상의 명확화(안 제2조).
-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주민 지원 근거 명확화(안 제4조).
- 재난 피해자를 위한 금전 지원을 병행 가능하도록 개정(안 제5조).

## 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 4.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## 5. 예산수반사항 : 별첨(비용추계서)

## 6. 입법예고 결과 : 생략

- 근거 : 「안산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6조제3항제1호  
“당해 자치법규안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”
- 사유 :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

## 6. 기타 참고사항 : 별첨(관련부서 검토의견서)

#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저소득 주민,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”를 “재난피해자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”를 “생활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해 안산시 주민에게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등록을”을 각각 “주소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1항)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## 2. 생활안정지원금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송바우나 대표발의 (행정 3561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,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 략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“생활안정지원금” 이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.</p> <p>4. ~ 5. (생 략)</p> <p>제4조(지원대상자)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안산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제2호의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제5조(지원내용) ① 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및 유사한 사업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</p> <p>3. ~ 5.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지원내용 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 재난피해자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생활안정과 재난 극복을 위해 안산시 주민에게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대상자) -----</p> <p>----- 주소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주소를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원내용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생활안정지원금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